

【근로자 준비서류】

구 분	서류명칭	발급주체(방법)	
근로소득 신고자	직전년도이전 입사자	1. 재직증명서(또는 고용계약서) 2. 소득금액증명원(연말정산한 근로소득자용)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포함)	고용주 국세청 인터넷 민원 (www.hometax.go.kr) 또는 고용주(국민건강보험공단)
	당해년도 입사자	1. 재직증명서(또는 고용계약서) 2.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과거 근무처 자격득실 이력 포함) 3. 급여통장 거래내역조회표 원본	고용주 국민건강보험공단 인터넷 민원 (www.nhic.or.kr) 금융기관
	일용근로자	1. 근로(고용) 계약서 2.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사본 3. 급여통장 거래내역조회표 원본	고용주 고용주 금융기관
근로소득 미신고자	1. 근로(고용) 확인서 2. 고용주 영업허가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3. 급여통장 거래내역조회표 원본	고용주 고용주 금융기관	
현금수령자	1. 고용주 사업자등록증 사본(고유번호증 포함) 2. 급여지급사실확인서(급여명세표)	고용주 고용주	

- ※1. 근로소득 증명서류 중 급여통장거래내역조회표(유사명칭 포함)는 “금융기관 지점의 직인이 날인된 원본”만을 접수
2. 정부, 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이 작성한 재직 및 소득증명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당해 서류에 의함
예) 구청장 등이 발급하는 소득 및 근로사실이 기재된 “공공근로사용증명서” 등
3. 재직증명서(고용계약서)는 재직을 증명하는 유사명칭의 서류를 포함
4. 법인인 경우에는 인사담당 또는 경리담당자에게 근로소득 원천징수 여부 확인

【자영업자 준비서류】

접수서류 목록	접 수 기 준
주민등록등본 (변동사항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대표자인 경우 각각 제출 - 접수일로부터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함
임차계약서 사본 (사업장 및 거주주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자 무등록 무점포 자영업자, 인적용역제공자는 사업장 임차계약서 접수 생략
금융거래확인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증신청일 현재 여신잔액이 가장 많은 금융기관 1곳. 단, 여신잔액이 금융기관별 1,000만원 미만인 경우 접수 생략 단, 대환대출에 대한 보증신청으로 대환대상채무가 카드론인 경우 여신잔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도 금융거래확인서를 접수토록 함 ※ 개인회생·개인워크아웃 진행 중인 자 접수생략
공통 소득금액 확인서류	<p>다음의 서류중 어느 하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금액증명원(국세청 발급)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부”(직장 퇴사후 개업시) ○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업소득원천징수부”, 최근 소속기관(회사)에서 확인 날인한 지급월의 소득 및 원천징수 내용이 표시된 “지급명세서(수수료, 수당 등 이와 유사한 명칭 포함)” ○ 국민건강보험료 납입명세서(최근 3개월) ○ 국민연금보험료 납입명세서(최근 3개월) ○ 위판실적증명서(어업인) ○ 주민자치센터 또는 사업시행기관 등이 발급하는 아래의 저소득 증빙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급자 증명서 ▪ 연간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 등
사업사실 확인서류	<p><저신용 자영업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 확인) <p><무등록소상공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청 고시 제2013-50호(“13.11.26)에 의한 「무등록 소상공인 확인요령」에 의한 “무등록 소상공인 확인서” ※ 점포내 사업영위자는 임대계약서 사본, 기타 개인용역제공 사업자(유제품 배달원 등)등은 사업사실 확인절차 없이 관련

		<p>계약서 등 확인 가능한 서류로 같음</p> <p><인적용역제공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천징수의무자가 발급하는 최근 2개월 이내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 납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소득자별사업소득원천징수부 ▪ 사업소득세 납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p>※미제출자는 “무등록 소상공인 확인서” 제출</p> <p><농림어업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림어업 종사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협·수협·산림조합 조합원 확인서 ▪ 행정기관·공공기관 등의 입증서류(아래의 서류 중 한가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인 확인서 - 농업인·어업인·임업인 후계자·독립가 증명서 - 신지식임업인 인증서 - 영림단원 확인서 - 농지원부 - 영농확인서 - 축산업등록증 사본 또는 축산가축사육현황신고확인서 - 어선어업(모두) : 어선원부, 어업허가증·선박증서·선박검사증서 사본 - 양식어업(중 1) : 어업허가증 사본, 어업면허증 사본, 행사계약서, 어촌계장 확인서 - 맨손어업 : 신고필증 - 영어사실확인서
창업기업	창업교육·컨설팅 이수 확인서류	○ 정부, 공공기관 발급 확인서류
	창업준비 소요 자금 증빙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대차계약서, 공사(인테리어 등)계약서, 납품계약서(냉동기·쇼케이스·진열대 등의 설비 및 상품) ○ 세금계산서, 대금지급 영수증 또는 입금증 사본 (원본대조 확인)